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185호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년 3월 12일

산업통상부장관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24년 「공급망안정화법」(재경부) 시행에 따라 “경제안보품목”을 지정·확인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그간 관련 절차규정은 미비

또한 「조세특례제한법」(‘25.3) 개정으로 소부장 분야 경제안보품목 과세 혜택 추가 등 관련 법·제도에서 경제안보품목 및 공급망안정품목(이하 “경제안보품목등”) 인용 사례 증가

이에 경제안보품목 및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전 전문가 활용, 과세특례 이외에 정부 지원 등 다수의 혜택을 포괄하는 확인 절차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

기존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경제안보품목까지 대상 확대

2. 주요내용

가. 경제안보품목등 선정(재검토) 전 수요조사 등 세부절차 마련

(안 제1조~제3조)

나. 정부 혜택 등 지원받기 위한 확인 신청 절차, 신청 서식(별지4), 보완·

처리기간(15일) 등 규정 (안 제5조)

다. 경제안보품목등 확인 등을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안 제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 앞

- 전화 : 044-203-4917

- 팩스 : 044-203-4717

- 이메일 : nugury71@korea.kr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6. 3. 12.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